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8호

나. 제안자 : 김경, 채인묵 의원 외 15명 찬성

다.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시민의 창의적 역량 향상과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선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 역시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 일반에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전문인력 양성,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식재산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 각종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지식재산에 관한 대시민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촉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 현황

-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¹⁾.
-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R&D 인력 및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이하 “지식재산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1)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에서 혁신이 생겨나고 부(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환경에 적응, 국가 간 심화되는 기술과 전문인력의 불평등을 극복, 경제활동 영역과 공공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중 하나로 ‘지식재산 제도’를 꼽음(세계경제포럼 2016. 1.).

- 지식재산 조례 제6조에 따라 2013년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2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등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16개 분야별 투자계획을 담고 있음.

〈‘지식재산도시, 서울’ 2차 추진 기본계획 중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상세구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992.8	181.2	190.8	199.8	207.0	214.0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IP기반 기술창업프로그램 운영	7	1.2	1.3	1.4	1.5	1.6
	기술기반 창업기업 IP경영지원	29.2	5.2	5.5	5.8	6.2	6.5
	IP사업화 촉진 기반구축	4.2	-	-	1.0	1.4	1.8
	IP연계 R&D기획·평가 실시	5.4	-	-	1.8	1.8	1.8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보호강화	아이디어 기술보호 강화	5.6	1.0	1.1	1.1	1.2	1.2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 고도화	33.9	5.9	7	7	7	7
	IP분쟁 대응역량 강화	12.5	2.5	2.5	2.5	2.5	2.5
	정부 IP정책과의 연계 강화	1.3	0.2	0.2	0.3	0.3	0.3
글로벌 시장의 IP활동 지원 확대	해외 IP권리화 지원	21	3.8	4.0	4.2	4.4	4.6
	해외진출기업 IP애로사항 해소	-	-	-	-	-	-
	서울브랜드 전략적 활용	93.4	16.9	17.8	18.6	19.6	20.5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 지원	2.5	0.5	0.5	0.5	0.5	0.5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공고화	IP친화적 환경 조성	5.7	1.1	1.1	1.1	1.2	1.2
	서울시 직무발명 활성화	9.9	2.0	1.9	1.9	2.0	2.1
	영상/문화 콘텐츠 전략적 지원	686.1	120.6	135.2	139.2	143.4	147.7
	디자인산업 발전 도모	75.1	20.3	12.7	13.4	14.0	14.7

- 이 중 ‘지식재산(IP)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분야는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 ‘서울지식재산센터’ 를 개소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후 2019년까지 5,251건의 지식재산권 창출, 1,605건의 지식재산 보호, 5,647건의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지원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추진현황 >

(단위 : 건, 기업 수)

세부 사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합 계	906	1,290	1,025	1,126	920	1,654	1,663	2,116	2,141	2,397	1,573	16,811
지식재산권 창출	403	362	404	455	320	836	633	793	786	169	167	5,251
지식재산권 보호	-	30	21	65	46	203	338	677	112	96	103	1,605
지식재산권 활용	-	-	-	-	-	15	23	1	20	20	27 (기업수)	106
발명 경진대회	-	-	-	-	1	1	1	1	0 (폐지)	0 (폐지)	0 (폐지)	4
IP스타기업 육성	455	892	582	601	549	558	612	568	271	287	272	5,647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48	6	18	5	4	41	56	76	310	344	114	973
IP상담·컨설팅	-	-	-	-	-	-	-	-	642	1,481	890	2,754

다. 조문별 검토

(1) ‘지식재산’ 의 정의 및 책무(안 제2조, 제3조)

- 안 제2조는 ‘지식재산’ 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지식재산법”)제3조제1호와 지식재산 조례 제3조제1호의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여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음.
- 안 제3조는 서울시장에게 지식재산 교육과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체장의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정책 실행을 유도하여 입법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2)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이하 “IP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IP교육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한 ▶목표와 기본방향, 전략, ▶활성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는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연계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사업의 계획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 현행 지식재산법 제8조는 5년 단위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이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관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교육·홍보와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 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지식재산법령의 위임을 받은 지식재산 조례 제6조는 시장이 5년 단위의 ‘지식재산 기본계획’ 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본 계획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지식재산 조례에서 규정된 지식재산 교육과 인식제고, 역량 강화 등의 교육 진흥 사항을 조례안으로 따로 분리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재산 조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등(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는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교육 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임.

- 안 제7조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지식 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육성 프로그램은 미미하고, 다양한 전문교육과정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식재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조치로 판단됨.

(4) 홍보·협력관계 구축(안 제8조, 안 제9조)

- 안 제8조는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노력과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행사 등의 개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 인지도 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지식

2) '지식재산, 얼마나 알고있는지'라는 질문에 잘안다(3.1%), 어느 정도 안다(51.5%), 거의 모른다(39.6%), 전혀 모른다(3.1%)는 응답 결과(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2020.5.12.~2020.

재산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달하고 있어 지식 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큼.

- 안 제9조는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특허, 저작권, 지식재산창출 지원 등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조치임.
- 다만, 지식재산 조례 제9조에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제2호),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제3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과의 관계와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와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유관기관과도 연계·협력 중임.

라. 종합의견

- 중국과 미국 등의 선진 국가들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³⁾
- 정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력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식재산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지식재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 또한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반영해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 대시민 인식제고 및

3) 중국은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 추진 등으로 전문인력 약 8만 명을 육성중이고, 미국은 과학·공학 인력이 연평균 3%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석사학위 이상의 인력 비중이 31%로 높으며, 일본은 초기 정부주도 법학관점의 지식재산교육에서 산학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지역연계 사업과 지식재산 관리 및 교육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국내외 지식재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시사점. 전정화(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홍보·전시회 등은 이미 지식재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서울지식재산센터 위탁(SBA)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조례를 별도로 분리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조례와의 체계성,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조례간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행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2. 단위사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제6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
4.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6.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관련 시의 특유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권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종자관리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